

Marina

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Marina

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Contents

I. 마리나 및 마리나업 개요 1

- 1. 마리나란? 1
- 2. 마리나업이란? 3
 - 가. 마리나선박 대여업 3
 - 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5
- 〈참고 : 마리나항만법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8

II.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절차 11

- 〈핵심 가이드〉 11
- 1. 창업 절차 개요 13
- 2. 창업 구상 및 사업성 분석 14
- 3.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 17
- 4. 마리나선박 도입 21
- 5.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 이수 23
- 6. 계류시설의 확보 33
- 7.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35
- 8. 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 38
- 9.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개시 42



III.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창업 절차 51

- 〈핵심 가이드〉 51
- 1. 창업 절차 개요 52
- 2.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확보 53
-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54

IV. 마리나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59

- 〈참고 :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62

부록1. 마리나시설 및 마리나선박 안내 65

부록2. 마리나산업 통계 및 참고자료 72





chapter **01.**

I . 마리나 및 마리나업 개요 1

1. 마리나란? 1

2. 마리나업이란? 3

가. 마리나선박 대여업 3

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5

〈참고 : 마리나항만법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8



1. 마리나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가이드북에서는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마리나항만법상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 마리나의 이해

- 마리나(Marina)의 어원은 '해변의 산책길' 또는 '해안에서 생선요리를 파는 곳'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작은 항구'라는 뜻으로 쓰임.
- 최근에는 수변지역에 마리나선박을 계류·보관하기 위한 수역시설, 레저를 즐기기 위한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겸비한 **복합적 해양레저공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나, 각 국가별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마리나를 보는 관점이 다름

해양레저산업 도입 초기 국가	해양레저 선진국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로 한정	레저관광숙박·레스토랑 등 각종 서비스시설을 갖춘 종합리조트 형태

-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해양레저산업을 이끌고 있는 ICOMIA(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 세계해양산업협회)는 요트 하버(Yacht Harbor)와 마리나(Marina)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며, 요트 하버는 단순 요트 계류를 위해 설계된 항구이며, 마리나는 상업시설과 주거·관광 기능이 포함된 워터프론트(waterfront)라 할 수 있다"라는 견해
-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마리나는 해양 관련 파생산업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자, 해양관광산업의 핵심시설로서 요트산업의 범주를 벗어나 종합적인 해양관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요트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숙박, 쇼핑몰 등)이 제공되는 복합 레저문화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

2. 마리나업이란?

가.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항만법’에 따르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란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과거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대여업 형태의 사업은 수상레저사업, 유선사업으로 등록·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비상구조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구비 등의 등록조건이 요구되며 운항구역 등이 제한적이므로 실제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관광 서비스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우측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선업 및 수상레저사업은 사업장 등의 등록조건이 까다로운 관계로 초기 창업비용이 과다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차터업)의 1인 또는 소규모 기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그로 인해 국내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차터업)이 정착되지 않았고, 마리나 선진국들과 같이 개인마리나선박 소유자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마리나선박을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관리비용을 저감하는 시스템도 국내에서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률의 시행일인 '15. 7. 7.부터는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활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을 등록·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비상구조선 구비 조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제출 조건을 마리나항만 내 선석을 확보한 증명서 제출로 대체하였고, 운항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수상레저사업,

유선사업 등으로는 곤란하였던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관광·레저 서비스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선업·수상레저사업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 비교

구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사업	마리나항만법
사업 정의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
대상 선박	1. 총톤수 5톤 이상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중 승객 정원 13명 이상 3. 노와 상앗대 등으로움직이는 선박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23종 (톤수 등에 대한 제약 無)	5톤 이상 마리나선박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등 8종)
사업 자격	해기사 자격 인명구조요원 자격	일반조종면허 인명구조요원 자격	일반조종면허 인명구조요원 자격
사업장	승강장, 승객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필요	계류장·탑승장, 승객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필요	마리나선박 계류시설(보유 또는 임대 모두 가능)
비상 구조선	반드시 갖춰야 함	반드시 갖춰야 함	-
제한 사항	관람유람선 또는 50톤 이상 선박만 주류반입 가능 운항구역 제한 있음	주류 판매금지	-

또한 1척의 마리나선박만으로도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여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국형 대여업(차터업) 창업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에 등록된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 대부분이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활성화되면 ① 마리나선박 소유자는 본인 소유 마리나선박의 임대를 통해 요트 관리비를 저감하고, ② 마리나선박 임대업자는 사업용 마리나선박 확보가 용이해지며, ③ 마리나선박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마리나선박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어 국내 마리나·요트 문화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기대된다.

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항만법’에 따르면,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마리나선박을 보관·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관계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인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 또는 요트 보관소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계류 이외의 영업행위 부문이나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제도적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를 위한 사업을 국내 법·제도 하에서 운영하려면 가장 유사한 ‘요트장업’으로 등록하는 수 밖에는 없었는데, 그러한 경우 사업자는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고,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 등록요건이 있어, 육상 보관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았다. 또한 수상 계류시설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 계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요트장업’의 과도한 시설기준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요트장업 등록기준

필수시설	시설기준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절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률의 시행일인 '15. 7. 7.부터는 적정 시설을 갖춘 후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되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은 해상 계류시설 또는 육상 보관시설과 운영 사무실을 갖추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요트 보관·계류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던 ‘요트장업’·‘창고업’ 등 보다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타 법령으로 운영 중인 기존 마리나 사업자들이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리나항만법」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참고 : 마리나항만법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배경

- 기존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마리나 서비스업 근거나 규정 등은 미비
 - 또한, 타법에 근거를 둔 수상레저사업, 유선업, 요트장업 등은 마리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지 않아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
- 따라서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리나업을 신설

■ 주요 개정사항

- ① 마리나업 범위 정의, 마리나업 신설
 -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정의하고 등록 근거 마련
- ② 마리나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율
 -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행위제한, 준수 의무 사항 마련
 -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보관·계류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부여
- ③ 마리나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④ 마리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MIC) 부여에 관한 근거 마련
 -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chapter **02.**

II.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절차 11

〈핵심 가이드〉	11
1. 창업 절차 개요	13
2. 창업 구상 및 사업성 분석	14
3.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	17
4. 마리나선박 도입	21
5.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 이수	23
6. 계류시설의 확보	33
7.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35
8. 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	38
9.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개시	42



핵심 가이드

■ 사업명

마리나선박 대여업

■ 정의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준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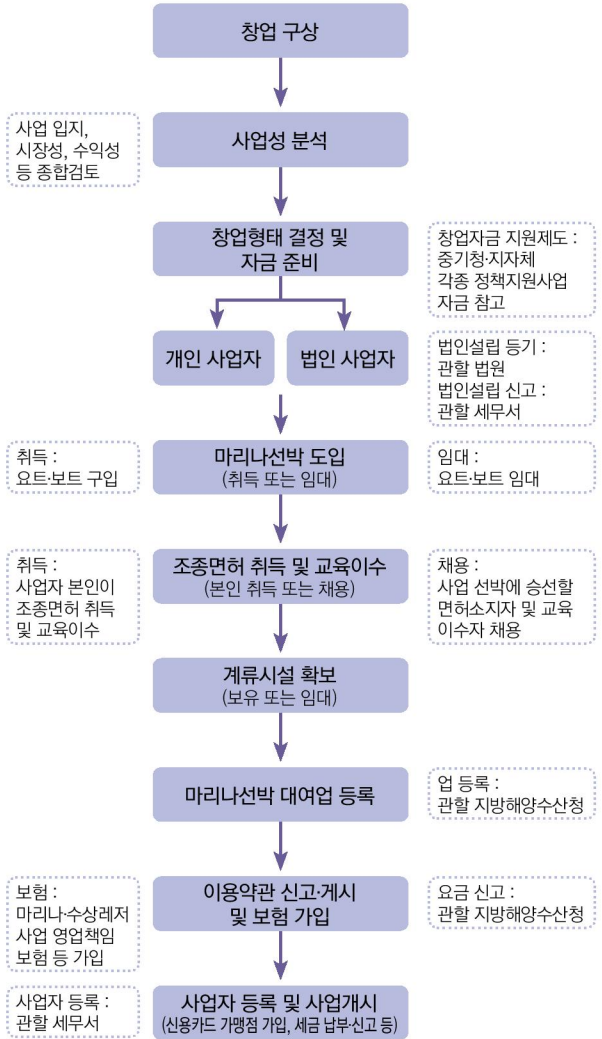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가입 필요(등록기준은 아니나, 보험 미가입 운영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가능)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p>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p> <p>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p> <p>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p> <p>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p>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인력기준	<p>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p> <p>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p> <p>3)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p>

1. 창업 절차 개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 프로세스를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다.



2. 창업 구상 및 사업성 분석

가. 창업가를 위한 조언

미국의 신생기업 중 1년을 견디는 비율은 채 50%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신생기업 중 창업 2년을 견디는 기업의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2013)’을 보면 1인 규모의 경우는 5년 후 생존율이 28.3%, 2인 이상 규모의 경우는 44.5%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 규모가 2인 이상의 경우가 생존율이 높다.

창업 성공 확률

생존율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1인 기업	60.0	47.1	39.3	33.9	28.3
2인 이상 기업	76.2	62.3	53.2	48.6	44.5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개발, 2013

즉, 창업에 대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금 부족, 매출 부진 등의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경영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장으로 산다는 것(2012, 흐름출판사)’이란 책에서는, 성공한 기업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다. “언제 기반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생활도 없이 사업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업에 매진할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만이 창업을 실천하라고 권유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창업은 바로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느냐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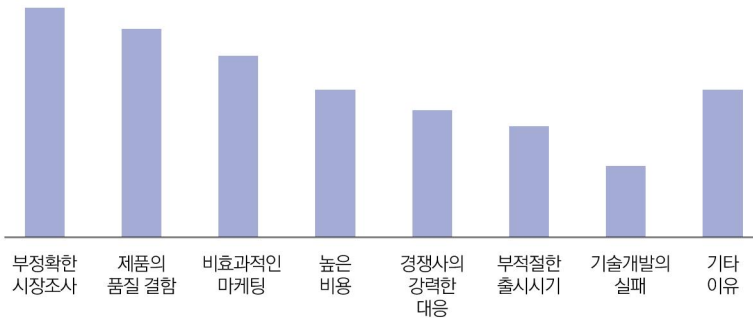
나. 사전 조사와 계획

어느 한 조사에서 실패한 200여 개의 신상품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확한 시장조사가 45% 정도로 나타났고, 실패 원인으로 비중이 클 것 같았던 ‘제어할 수 없는 환경’ 요인은 25% 정도에 머물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의 성공요인은 운이 아니라, 사업 시작 전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이를 구체화하여 사업화하는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후순위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는 정보와 지식에 대하여 가치를 많이 두지 않기 때문인데, 고부가가치와 틈새시장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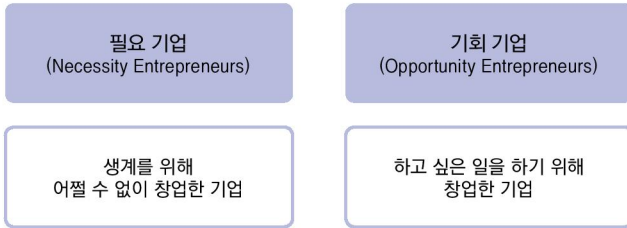
보이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 준비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업 아이템과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을 결정하는 굳은 각오보다도 사업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

신상품 실패의 원인



다. 필요기업 VS 기회기업

기업을 2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한다면 ‘필요기업’과 ‘기회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필요기업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기업을 의미하며, 기회기업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창업한 기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필요기업은 창업 5년 안에 2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비율이 2%에 머무르지만, 기회기업은 14%로서 약 7배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으로 갈수록 필요기업보다는 기회기업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양현봉 외 2인, 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행태와 성과분석, 2009)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계류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도 기회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마리나와 요트를 사랑하는 준비된 창업가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마리나·요트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대중화시키면서, 본인들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매출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3.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

가. 창업형태 결정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로서의 창업과 법인사업자로서의 창업은 그 절차가 상이하어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인사업자로 마리나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법인은 관할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법인사업자로서 마리나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선박 1척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특성상, 1인 기업 또는 소규모 형태의 창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가이드북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규정

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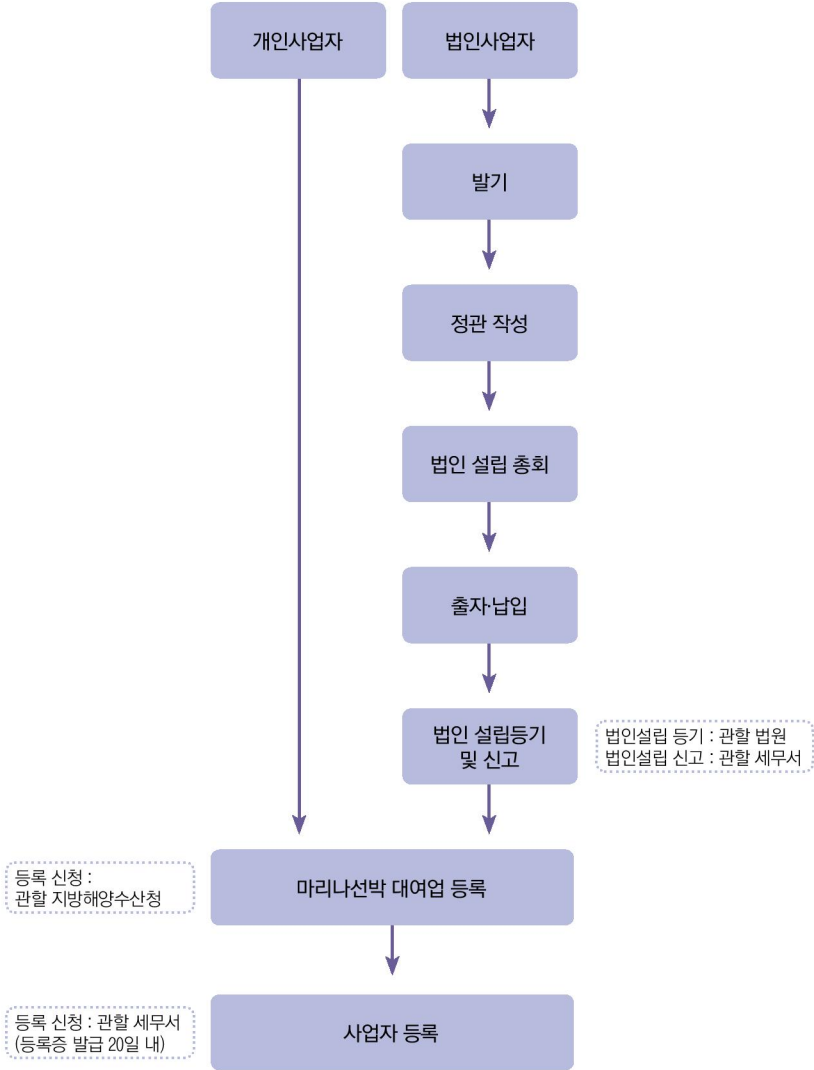
사업자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서식 관련)

첨부서류 구분	내 용
1.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3. 상가건물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4.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도매업, 기체연료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가스 운영업 등에만 해당

상기 규정과 같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첨부서류에 사업허가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 사업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는 관계 기관에 사업허가를 신청한 신청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먼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을 하고, 사업 등록증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창업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반드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발급일 20일 이내에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창업 형태



나. 자금준비

창업을 준비하고 회사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창업초기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의 확보는 물론, 비상시의 자금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초기 창업자는 사업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시기이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현재 여건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출실적이나, 사업화 실적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창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대부분이겠으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외부로 눈을 돌려 정부지원금, 창업 지원금, 차입(융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외부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크게 정부의 정책자금을 통한 조달방법과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 정책자금 소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 활용 가능

- **자금 종류** 정책자금은 크게 자금용자, 출연자금, 간접지원으로 구분되며, 지원규모·조건 및 자금 종류 등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
- **지원 계획** 통상 매년 1월에 해당연도의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예산운용 상황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지원 계획이 공고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정책자금은 상·하반기로 배정되고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자금지원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적기에 신청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co.kr>) 등 참고

신용보증제도는 회사의 성장 발전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 무형의 신용을 발굴, 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등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지원에는 법에 의해 보증이 제한된 업종이 있으므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마리나선박 도입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1) 마리나선박을 확보하여야 하고, 2) 해당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조종면허를 갖추고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업자 본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3) 선석이 구분된 계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중 선박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
(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사업등록기준) - 가목 마리나선박 기준

구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p>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p> <p>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p> <p>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p> <p>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p>

따라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 장기 임대 등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기 법 규정에서 말하는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이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선박국적증서 상에 등록된 선박의 톤수(용적 톤수)를 말하는 것이며, 제품 홍보 브로슈어에 기재된 임의 톤수(중량 톤수)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 이수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한 두번째 요건으로, 사업에 이용될 마리나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마리나선박은 20톤 미만으로서 수상레저 안전법으로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사업주 본인이 취득하거나, 그러한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의 채용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선박의 톤수가 20톤을 초과하여 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 직원법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또는 6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거나, 그러한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의 채용이 필요하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사업등록기준) - 다목 인력 기준

구분	등록기준
다. 인력기준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 안전법」 제4조에 따른 <u>제1급 조종면허</u> , <u>요트조종면허</u>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춘 것 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u>제2급 조종면허</u>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것 3)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 <u>유선 및 도서 사업법 시행령</u> 」 제20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마리나선박에 관련된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중복으로 적용되므로, 선박별로 필요한 면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동력수상레저기구

가.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1급 조종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 요트 조종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한정면허) 및 동항 제6호(소형선박 조종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소형선박 정의) 참조

1-2. 동력수상레저기구(여객 13명 이상)

가.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선장, 기관장 각각 1명 필요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 1급 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1급 조종면허 / 기관장 : 6급 기관사

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 선장, 기관장 각각 1명 필요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 요트 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요트 조종면허 / 기관장 : 6급 기관사

2. 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

가.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 (연안) 선장·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1명 가능)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각각 1명)

나. 여객 13명 이상인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각각 1명)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6급 기관사(각각 1명)

[참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소형선박의 승무기준)

항행구역	선박의 구분	선박직원	승무자격
연안수역	여객선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여객선 외의 선박	선장 및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원양수역	여객선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어선	선장 및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다. 25톤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제2호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기관부 승무기준” 참조

또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 본인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명구조 자격 등과 관련된 상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인명구조요원)

제20조(인명구조요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국내에 등록된 요트·보트의 약 95%가 20톤 미만인 동력 수상레저기구이므로, 본 가이드북에서는 20톤 미만의 선박에 관련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 1) 조종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기시험을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국의 해양경비안전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 2)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 3)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 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하다, 장소변경은 불가하다.

필기시험 준비사항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해양경비안전서 소정양식)1통 / 증명사진 2매(3cm×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해양경비안전서 방문접수만 가능) 주민등록증(학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4,000원(인터넷 접수 시 처리비용 별도)	
대리접수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험방법	4지 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구술시험 외국어 PC시험 가능
시험내용	- 일반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 요트조종면허 : 요트활동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준비물	주민등록증(학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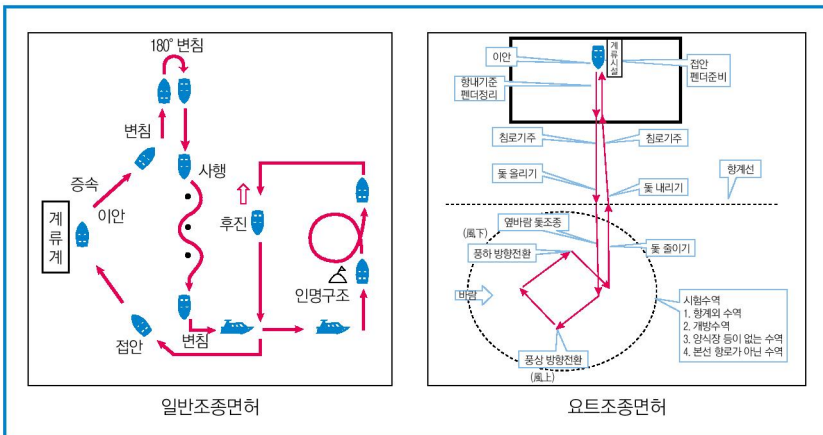
나. 실기시험 접수 및 응시

- 1)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한다.
- 2)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접수가 가능하다.
- 3)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실기시험 준비사항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표,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해양경비안전서 방문접수만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사진 첨부된 것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54,000원(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	
대리접수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실기시험 코스



다. 수상안전교육

- 1) 교육대상 :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최초 또는 갱신 시)
- 2) 교육시기 : 수상안전신규교육(최초), 수상안전갱신교육(갱신)
- 3) 교육내용(영상교육 포함 3시간)
 -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수상 상식
 - 수상 구조
- 4)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 가) 갱신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시험업무 종사자 교육 또는 안전교육강사 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라. 동력 조종면허의 취득

- 1) 필기시험(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
 - 학과시험 : 1급(70점), 2급(60점) 이상 득점
- 2) 실기시험(시험장 시험)
 - 실기시험 : 1급(80점), 2급(60점) 이상 득점
- 3) 필기시험 과목

동력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

구분	내용	비고
1. 수상레저안전	가. 수상환경(조석, 해류) 나. 기상학 기초(일기도, 각종 주의보, 경보) 다. 구급법(생존술,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라. 각종 사고 시 대처방법 마.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2. 운항 및 운용	가. 운항계기 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다. 신호	
3.기관	가. 내연기관 및 추진 장치나. 일상정비다. 연료유. 윤활유	
4.법규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4)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동력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선체	빛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길이	약 5~6m	전폭	약 2~3m
최대출력	100마력 이상	최대속도	30노트 이상
탑승인원	4인승 이상	기관	제한 없음
부대장비	나침의(기름10mm 이상), 속도계(MPH), RPM게이지 각1개, 예비노, 소화기, 자동정지출		

마. 요트조종면허의 취득

- 1) 필기시험(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
 - 학과시험 : 70점 이상 득점
- 2) 실기시험(시험장 시험)
 - 실기시험 : 60점 이상 득점
- 3) 필기시험 과목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

구분	내용	비고
1. 요트활동개요	가. 해양학 기초(조선,해류,파랑) 나. 해양기상학 기초(해양기상의 특성, 기상통보, 일기도 읽기)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2. 요트	가. 선체와 의장 나. 범장 다. 기관 라. 전기시설 및 설비 마. 항해장비 바.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사. 생존술	
3. 항해 및 범주 (帆走)	가. 항해계획과 항해(항해정보, 각종 항법) 나. 범주 다. 피항과 묘박 라. 식량과 조리, 위생	
4. 범주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마. 「전파법」	

- 4)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길이	약 10m	전폭	제한 없음
최대출력	20마력 이상	최대속도	제한 없음
탑승인원	6인승 이상	기관	선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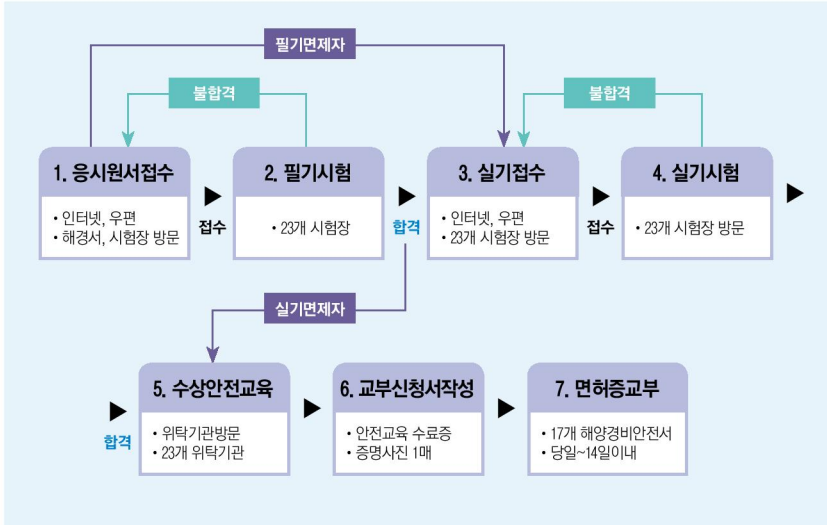
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국민안전처는 관 주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수상레저 동호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업무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요트시험 대행기관을 포함하여 전국 23곳의 조종면허시험 대행 기관을 두고 있다.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구분	대행기관	지정기관	실기시험장	지정일
1	서울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	한강공원 난지지구	01.1.15
2	경기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기지부	가평군 청평호	01.1.15
3	강원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강원지부	춘천시 의암호	01.1.15
4	충남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충남지부	아산시 신정호	01.1.15
5	충북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충북지부	충주시 충주호	01.1.15
6	경북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북지부	영덕군 오십천	01.1.15
7	경남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남지부	마산시 광암해수욕장	01.1.15
8	서부경남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부경남지부	합천군 봉산면	01.1.15
9	경북제2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북지부	안동시 안동호	01.1.15
10	울산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울산지부	북구 태화강하류	01.1.15
11	부산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수영구 수영강하류	01.1.15
12	전북시험장	(주)지평선 마린리조트	김제시 능제저수지	05.6.17
13	전남서부시험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전남지부	영암군 영산호	01.7.23
14	전남동부시험장	(사)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여수시 부표관리사무소	01.7.23
15	제주시험장	제주도 요트협회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01.7.23
16	서울요트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서울지부	한강공원 난지지구	07.7.18
17	강원요트시험장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삼척시 덕산항	08.9.16
18	경북요트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경북지부	영덕군 강구항	08.9.16
19	경남통영요트시험장	통영요트학교	통영시 도남관광단지	08.9.16
20	경남고성요트시험장	(사)한국외양요트협회 경남서부지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08.9.16
21	부산요트시험장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영도구 동삼동	10.11.1
22	전남요트시험장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목포시 죽교동	10.11.1
23	제주요트시험장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시 도두동	10.11.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절차(국민안전처 자료)



마리나입 창업가이드북

6. 계류시설의 확보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한 세번째 요건으로, 사업에 이용될 마리나선박이 안전하게 계류 및 접안, 이안을 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필요하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사업등록기준) - 나목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구분	등록기준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 할 것

여기서 말하는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이란, 사업에 이용되는 마리나선박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의미한다.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은 일반적인 부두안벽 및 잔교에서부터, 아래 사진과 같은 부유식 폰툰 계류시설과 같이 다양하지만, 그 형태와 규모와는 상관 없이 번호 또는 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해당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매매·분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류시설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그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계류시설은 반드시 마리나항만법으로 지정·고시된 마리나 항만구역 내의 계류시설만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조성된 어항시설에 해당되는 계류시설이라 하여도 관리청으로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는다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하천법에 따라 조성된 ‘강(江)마리나’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7.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함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양쪽)			
<h3>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h3>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예시 : 1962.1.1.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사업장의 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고, 마리나 계류시설 번호 등을 함께 기재			
마리나선박 명세 예시 : 1. 선명 : 000, 선박번호 : 0000000, 톤수 : 00톤, 길이 00M, 승선정원 00명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기간 예시 : 2015. 7. 8. ~ 2018. 7. 6.			
요금 예시 : 1. 000호 : 1시간 당 0000원, 1일 당 000원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서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수수료</p> <p>20,000원</p>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의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별 제2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 자유 양식으로 사업장의 상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재하되, 전화팩스·핸드폰 등 연락처 및 상기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 ☞ 또한 사업에 등록되는 마리나선박과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사진도 첨부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서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 사업에 등록되는 마리나선박이 본인의 소유이거나 국가·지자체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타인의 선박을 임대차·사용대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3년 이상의 사용권 확보 필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
 - ☞ 계약서·협약서 등은 원본 제출 원칙,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원본대조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여야 함.) 날인 필요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1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 가이드북 「II-5.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 란을 참조하여 등록할 선박에 적합한 조종면허 증서와 교육 증서 서류를 준비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적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빙하는 임대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 가급적 3년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 3년 미만의 사용권에 대한 서류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 계약서·협약서 등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시설소유자의 원본대조필(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여야 함) 날인 필요

※ 이외에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니 준비하도록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 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명칭	관할구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은 제외), 충청남도(평택항·당진항에 한정)

8. 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

가. 이용약관 신고·게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이용약관 신고 시에는 마리나업 등록신청과 함께 신청하도록 한다.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항 생략)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예시 : 1962.1.1.
	주소		(전화:)
도로명 주소로 기재			
사업장의 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고, 마리나 계류시설 번호 등을 함께 기재			
마리나선박 명세 예시 : 1. 선명 : 000, 선박번호 : 0000000, 톤수 : 00톤, 길이 00M, 승선정원 00명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계류시설 명세 예시 : 계류시설 위치 도로명 주소 및 계류시설 번호 등 해당 계류시설 명세를 기재			
대여 기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상 기재된 사업기간 기재 (최초 신청서 등록 신청서 상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기재)		
대여료	(필요시 마리나선박 종류별 보관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 1. 000호 : 1시간 당 0000원, 1일 당 000원 2.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그 밖의 이용조건 그 밖의 이용조건 등이 있는 경우 기재			
적용일 현재 신고하는 이용약관의 희망 적용일을 기재			
변경 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60g/㎡)]			

나. 보험 가입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보험가입 기준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보험가입 기준과 동일하다. 현재 국내보험사들이 마리나업 관련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제도가 신설된 초기임을 감안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선 가입 후,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는 시점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32조의4(보험 가입)

제32조의4(보험 가입)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마리나업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할 것

참고로, 수상레저사업용 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주요 내용
보험 가입 대상	-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등록사업자
보험의 종류	- 수상레저 및 운전자 상해보험(의무) - 가이드 및 운전자 상해보험(의무) - 선체 보험(선택)
가입시 필요 서류	- 수상레저 보유현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 - 사업자 등록증 -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 - 가이드(안내요원) 명단 - 수상레저사업 허가증

구분	주요 내용
보장 내용	<p>1) 대인배상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1억 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 원 <p>2) 치료비담보특약 : 1인당 1백만 원, 1사고당 1천만 원</p> <p>3) 제3자 배상책임담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를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6천만 원 / 1사고당 6천만 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 원 <p>4)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가 수상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마린나선박 관련 보험 취급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츠화재(연락처 : 02-6464-3036) - KB손해보험(연락처 : 02-6900-3407) - 탑스넷(연락처 : 02) 755-0020) - 동부화재(연락처 : 02) 2262-3690) - 삼성화재(연락처 : 02) 311-1172) - (주)애니인슈(연락처 : 02) 2678-7511) - 한국해운조합(연락처 : 02) 6096-2153)

9.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개시

가.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할 세무서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세무서(거주지가 아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사업자 등록 규정

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사업자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서식 관련)

첨부서류 구분	내 용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상가건물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도매업, 기체연료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가스 운영업 등에만 해당

나. 세금납부와 신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추진세금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 자칫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련 세무신고,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1) 개요

사업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법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2)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해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물론, 부동산 임대 소득 및 이자 소득, 일시재산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모든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1~5.31에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정관상 정해진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는 법인 본점 소재지의 세무서이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기간별로 발생한 거래내역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 납세 사업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일반과세자 납부 방법

-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 방법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할 사항	신고기간	신고할 사항	신고기간
예정고지	예정고지 발부	4. 1. ~ 4. 25.	예정고지 발부	10. 1. ~ 10. 25.
확정고지	상반기 사업실적	7. 1. ~ 7. 25.	하반기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 1, 2기 예정신고는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각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등 관련 규정 참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시행 2013. 7. 1.][국세청고시 제2013-22호, 2013. 7. 1., 일부개정]

제3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선정
 3. 결제금액 입금을 위한 통장사본

라. 직원 고용 관련 신고사항

직원을 채용했다면 직원 관리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인사 및 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과 취업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부적으로 관련 기관에 기본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다.

1)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꼭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이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금대장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2) 4대 보험과 취업규칙 사항 신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험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고용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성립 관계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할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규칙 사항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 목	구비서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고서	국민연금법 제21조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고용보험법 제15조
산업재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취업규칙 신고 노동부 지방사무소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근로기준법 제96조



chapter **03.**

Ⅲ.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창업 절차 51

〈핵심 가이드〉	51
1. 창업 절차 개요	52
2.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확보	53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54



핵심 가이드

■ 사업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정의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 준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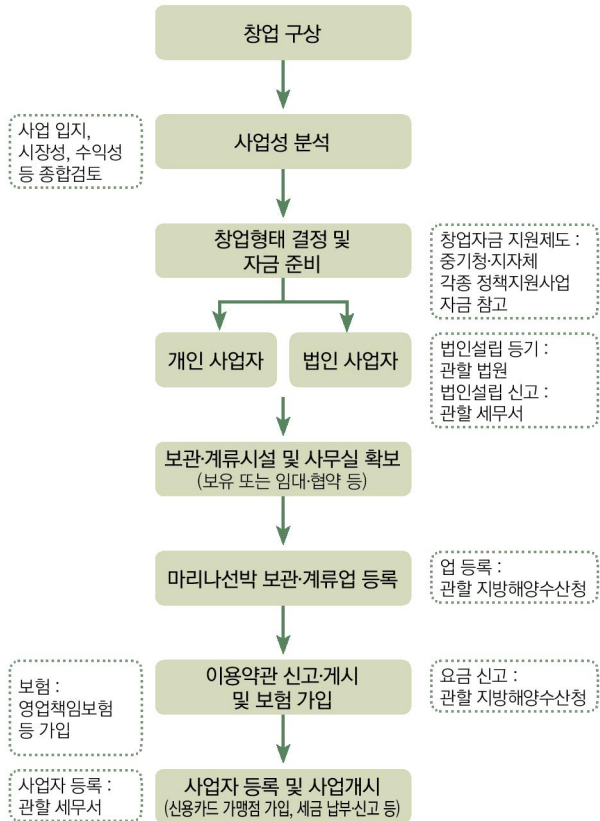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가입 필요(등록기준은 아니나, 보험 미가입 운영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가능)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1. 창업 절차 개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창업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절차는 모두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절차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번 장에서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을 위한 시설확보 및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확보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등록기간 동안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과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확보’란 반드시 보유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마리나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 항만법 등의 관계법령상 관리청으로부터의 사용허가 또는 해당 시설 소유자로부터의 매매·분양·임대 또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는 협약(유상 또는 무상을 가리지 않음) 등 다양하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u>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u>
나. 사무실	<u>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u>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함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생략

② 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 자유양식으로 사업장의 상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재하되, 전화팩스핸드폰 등 연락처 및 상기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 ☞ 또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업장의 사진도 첨부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에 대한 승인도면 등 제출, 승인도면이 없는 경우, 자유 형식의 도면(배치도)에 사진을 첨부하여 상세히 작성 필요

4.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또는 도시과 및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지적도 또는 지형도 등 발급 가능

5.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사용권에 대한 계약서·협약서 등은 가급적 원본을 제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시설 소유자 또는 허가권자의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마리나항만법, 어촌어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시설 사용허가 등의 서류는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여도 무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h2 style="margin: 0;">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서</h2>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i>예시 : 1962.1.1.</i>	
	주소 <i>도로명 주소로 기재</i>		
사업장의 위치 <i>도로명 주소로 기재</i>			
보관·계류시설 명세 <i>사업장 명칭, 보관·계류시설 종류, 보관·계류시설 규모, 보관·계류 최대 가능척수 등 기재</i>			
사업기간 <i>예시 : 2015. 7. 8. ~ 2018. 7. 6.</i>			
요금 <i>예시 : 1. 00톤 미만 선박 : 1일 000원, 1달 00원 2. 각 이용조건에 따라 기재</i>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계류 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 ²) 또는 중질지(80g/m ²)]			

이때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 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명칭	관할구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은 제외), 충청남도(평택항·당진항에 한정)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 이후의 보험 가입 및 이용약관 등 신고·게시 절차,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개시와 관련한 숙지사항 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해당 절차를 참고하도록 한다.



chapter **04.**

IV. 마리나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59

〈참고 :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62



마리나선박 대여업만 등록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류 판매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 「마리나항만법」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서의 주류 판매 또는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업(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주세법상의 주류소매업 등의 사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자의 운항 대행 서비스를 받지 않고 선박만을 렌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선내 음주가 가능
 - 다만,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이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조종할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또는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벌금 및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함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요트·보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수상레저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용자에게 수상스키 등을 태워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여 주는 사업이며,
 - 수상레저사업은 수상레저기구(요트 이외의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카누·카약 등도 포함)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임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5톤 이상의 선박만이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요트·보트만을 빌려주거나 태워주는 것이 가능하며,
 - 수상레저사업과 같이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등을 태워주는 사업은 불가능
 - 따라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만 등록된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등을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처벌이 예상됨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시 이용자를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타 도서지역 등에 내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자의 운항 대행 서비스를 받지 않고 오직 선박만을 렌탈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 마치 렌트카를 이용하듯이, 해당 선박을 직접 조종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 의지에 따라 특정 도서지역이나 다른 항만에 방문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선박 자체의 항행구역(선박검사증서 또는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항행구역을 말함)에 따른 항해가능범위는 제한됨.
- 그러나 사업자(또는 종사자)가 선박을 조종하여 이용자를 타 도서지역이나 다른 항만에 내려주는 것은 「해운법」 상의 '여객운송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의 '도선사업'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높음
- 이는 마리나항만법 제2조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정의를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있어,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여객의 운송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에 따라 보험가입의무가 있는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마리나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의 보험가입 조항은 마리나업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의 의무'임

- 따라서 보험가입은 마리나업 등록기준은 아니며, 보험가입 증명 서류가 마리나업 등록제출 서류는 아님
- 다만, 등록사업자가 보험가입 없이 영업할 경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명령*, 제28조의7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등록 취소
***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원에 10일을 초과하는 위반기간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로, 마리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대인 배상책임 보험으로서, 현재 (주)메리츠화재 등에서 마리나업 전용 상품을 준비중

- 꼭 마리나업 전용 상품이 아니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마리나업 운영상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보험 가입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임대를 통해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운영하는 것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제8조제8항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통상 수역이 특정되지 않은 선박 계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지,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의 일부를 특정하여 다시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목적은 애초에 계류시설의 임대, 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점용·사용 허가받은 자의 계류시설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것이 특별히 공유수면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 :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마리나업을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4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원에 10일을 초과하는 위반기간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양수, 합병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5호	20만 원
법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6호	20만 원
법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7호	20만 원
법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 8호	10만 원
법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 9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원에 10일을 초과하는 위반기간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chapter **05.**

부록1. 마리나시설 및 마리나선박 안내 65

부록2. 마리나산업 통계 및 참고자료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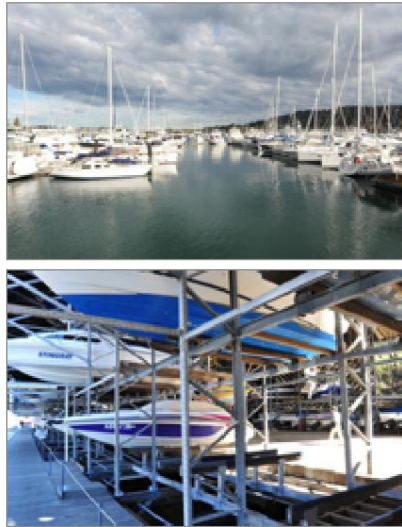
부록1. 마리나시설 및 마리나선박 안내

1. 마리나의 일반적 기능과 시설

1) 계류 및 보관시설

마리나의 계류 및 보관시설은 마리나선박의 해상, 혹은 육상의 정박이나 보관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마리나선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수면보관과 육상보관이 있다. 수면보관은 부잔교 등의 계류시설에 마리나선박을 계류한 채로 보관하는 것이고 육상보관은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을 육상의 야드나 보트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이다. 대형 마리나선박은 수면보관이 일반적이고, 육상보관은 주로 소형 마리나선박이 이용한다.

마리나의 계류(上) 및 보관(下) 기능



2) 상하가시설

마리나에서 육상보관되고 있는 선박이 수상으로 출입하는 경우와, 수상의 선박이 수리·점검·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상하가가 필요하다. 상하가에는 경사로, 포크리프트 (fork lift), 크레인 등이 이용된다.

마리나의 상하가 기능



3) 수리·점검시설

보팅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마리나선박의 적절한 수리·점검이 불가피하며, 마리나의 수리시설은 간단한 수리시설부터 전문적인 수리공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마리나의 수리 및 점검 기능



4) 보급 · 청소시설

마리나는 계류된 마리나선박 또는 방문 선박의 주요물자인 물, 연료, 식음료를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개인 및 클럽·동호인의 장거리 항해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리나의 보급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마리나선박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청소시설도 필요하다. 쓰레기,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리나의 보급 기능



5) 숙박 · 휴식시설

마리나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샤워·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최근 들어 해양 여가활동이 장기적이고 체류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마리나에도 호텔 등의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마리나에서는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향후에는 숙박 및 휴식 시설이 마리나에서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마리나의 숙박 및 휴식 기능



6) 관리운영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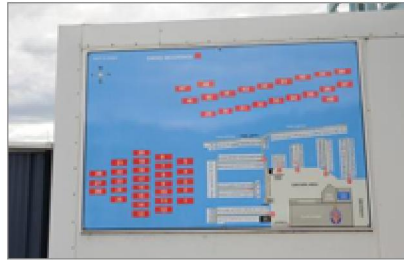
관리운영시설은 일반적으로 클럽하우스로 불리는데, 클럽하우스의 공통적인 기능은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기능으로 크게 분류된다.

클럽하우스의 기능

기능	시설·설비	비고
마리나시설 및 이용자의 관리기능	프런트, 관리사무실, 하버사무실, 응접실, 당직실, 화장실, 로비	마리나 고유의 것
항해자 및 오너에 대한 서비스 기능	탈의실, 샤워실, 욕실, 선구라커, 세면실, 마린shop, 클럽룸, 연구실(회의실)	마리나 고유의 것
항해 후 선원 및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	커피shop, 매점, 레스토랑, 숙박시설, 연수실(기업연수 등)	제3자에 의한 영업도 가능

기본적으로 클럽하우스는 이용자의 공간과 관리자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용자의 공간은 로비·라커룸, 화장실·샤워실, 클럽룸, 마린샵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관리자의 공간은 사무실, 응접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마리나의 관리운영시설



7) 연수·교육시설

요트, 그 중에서도 딩기요트는 레저로서보다 오히려 스포츠로서의 색채가 짙어 요트스쿨, 강습회 등이 많이 열리는데, 최근 마리나에서 주최하는 요트스쿨, 강습회 등이 매우 확대되고 있어 마리나에 요트 연수·교육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마리나의 연수 및 교육 기능



2. 마리나선박의 구분

1) 모터보트(스피드보트)

모터보트는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전용의 보트들이 많다. 이들 보트는 사람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인명구조의 요인 때문에 선수가 데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웨이크보드는 타워 붕이, 수상스키는 선미에 스키 붕이 장착되어 있다.

모터보트(스피드보트)



2) 낚시보트

낚시보트는 선수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워크어라운드와 하우스 타입으로 나뉜다. 낚시보트는 낚시대 홀더, 자동식 수조 등 선상낚시에 특화된 옵션이 장착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ft 전후의 보트들이 많으며 바다의 거친 파도를 어느 정도로 치고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낚시를 하면 선실이 많이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바닥을 카펫 대신 FRP로 외부마감을 하기도 한다.

낚시보트



3) 세일요트

주 동력장치가 엔진이 아닌 돛으로 이동하는 요트가 세일요트이다. 접안·이안을 위해 보조 동력으로 엔진은 장착되어 있지만, 실제 운항은 바람을 이용한다. 바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요트이기에 파워요트에 비해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해양스포츠로서 매력적인 부분이 더 많다.

선실(Cabin)의 유무에 따라, 덩기요트(Dingy yacht)와 크루저 요트로(Cruiser yacht) 나누어지는데, 덩기요트는 주로 입문자와 해양스포츠 활동으로 많이 이용되며, 크루저 요트는 해양 여가활동을 주목적으로 이용된다.

세일요트(좌: 덩기 요트, 우: 크루즈 요트)



4) 파워 요트

주동력으로 엔진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30ft급 이상의 크기를 모터보트와 구분하여 파워요트로 통칭한다. 크루저 요트와 마찬가지로 선내에 여가활동에 필요한 필요시설들(침실,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을 갖추고 있다.

파워 요트



5) 슈퍼 요트

선체길이가 24m(80ft)이상인 호화 레저요트를 말하며, 선실에는 침실과 응접실, 화장실, 싱크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항해가 가능한 요트이다. 대형인 만큼 고가이며, 매년 슈퍼요트 판매 척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13년 세계해양산업협회(ICOMI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00척 이상의 슈퍼요트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된다.

슈퍼 요트



부록2.
마리나산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국내 레저선박 등록 및 건조·수출 현황

■ 레저선박 등록 현황

(단위 : 척)

법령별 연도별	계	수상레저안전법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선박안전법 (플레저보트 및 유선)
총계(누적)	12,985	12,115	870
2014년	2,292	2,320	△28
2013년	2,162	2,146	16
2012년	1,595	1,562	33
2011년	1,118	1,004	114

■ 레저선박 건조·수출 현황

(단위 : 척)

구 분	레저선박 건조척수	레저선박 수출척수	수출 대상국
2014년	129	16	미국(하와이) 2, 일본 1, 중국 2, 몰디브 1, 말레이시아 2, 터키 1, 싱가포르 1, 콜롬비아 4, 팔라오 2
2013년	240	27	미국(하와이) 2, 일본 12, 중국 2, 몰디브 2, 말레이시아 2, 홍콩 2, 미얀마 4, 필리핀 1
2012년	88	10	중국, 태국, 크로아티아 (국가별 수출 척수자료 無)
2011년	82	0	-

2. 세계 마리나산업 주요 현황(세계해양산업협회, '13)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기타	총계
마리나 수	11,000개	565개	2,700개	450개	570개	8,095개	23,380개
종사자 수	29.3만 명	3.1만 명	2.0만 명	2.8만 명	1.3만 명	32.1만 명	70.6만 명
관련업체	29,315개	4,194개	3,560개	2,214개	700개	23,921개	63,904개
선박 수	1,590.6만 척	55.2만 척	50.6만 척	183.5만 척	28.7만 척	990.0만 척	2,898.6만 척

국가명	'13년 등록 척수	국가명	'13년 제조 척수
총계	28,986,426	총계	3,246,120
미국	15,906,067	중국*	3,109,416
캐나다	4,300,000	일본	32,971
호주	1,835,000	프랑스	20,994
스웨덴	881,000	폴란드	16,590
노르웨이	859,000	핀란드	13,397
핀란드	807,000	영국	9,699
영국	551,560	독일	8,438
이탈리아	469,038	뉴질랜드	8,200
네델란드	520,000	아르헨티나	7,813
뉴질랜드	514,284	스웨덴	5,413
프랑스	483,051	브라질	4,886
독일	505,795	터키	3,005
일본	287,350	노르웨이	2,550
스페인	195,730	그리스	1,425
아르헨티나	184,341	체코	604
그리스	156,413	크로아티아	540
크로아티아	102,475	스페인	179
스위스	99,301	한국	240
터키	83,075		
폴란드	68,940		
브라질	75,310		
아일랜드	27,010		
체코	20,850		
중국	53,836		
한국	10,257		

* 중국의 경우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제조 척수 (293만 척)가 합산된 수치

** 세계 해양산업협회 '14년 통계자료는 '15년 하반기 발표 예정

3. 국내 요트·보트 조종면허 취득자 수

(단위: 척)

연도별 \ 면허종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총계(누적)	153,559	51,929	93,729	7,901
2014년	13,422	4,020	8,409	993
2013년	13,973	4,587	7,984	1,402
2012년	14,233	4,884	8,108	1,241
2011년	13,413	4,243	7,707	1,463
2010년	11,500	3,933	6,814	753
2009년	12,055	4,134	7,170	751
2008년	9,205	3,077	5,700	428
2007년	9,300	2,908	6,160	232

* 1급 :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면허시험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2급 :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라프트, 스쿠터 등) 조종을 위한 면허

요트 : 요트를 조종하는 자 및 요트조종면허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4. 전국 마리나 현황표 (기본계획 미반영 포함)

구분	위 치 (항명)	마리나명	개 발	운영 주체	개발 근거	개발 년도	개발 규역	시설규모		개발 사업비 (억)	투자주체
								해상	육상		
포 중 (32)	한 강	서 울	(주)서울마리나	(주)서울마리나	민투법	'11	하천	60	30	270	민 간
	경 인	김 포	수공	위터웨이플러스	항만법 (마리나항만법)	'12	무역항	136	60	777	민 간
	전 곡	전 곡	화성시	화성 도시공사	어촌어항법	'09 '11	지방 어항	145	55	467	국 비 (92) 지방비(375)
	보 령	보 령	보령시	보령시	공유수면 매립법	'01	기타	-	50	30	국 비 (8) 지방비(22)
	격 포	격 포	부안군	전북 요트협회	어촌어항법	'11	국가 어항	37	-	48	국 비(24) 지방비(24)
	목 포	목 포	목포시	세한대 산학협력단	항만법	'09	무역항	32	25	70	국 비(35) 지방비(35)
	여수 요트경쟁	소 호	여수시	전남 요트협회	공유수면 매립법	'87	기타	-	50	16	국 비(7) 지방비(9)
	완 도	완 도	국가(전남도)	-	항만법	'13	무역항	9	-	16	국 비
	물 건	물 건	남해군	남해군 요트협회	어촌어항법	'11	국가 어항	25	-	20	지방비(20)
	삼천포	삼천포	(주)삼천포	(주)삼천포	어촌어항법	'06	기타	22	20	5	민 간
	통 영	총 무	금 호	금 호	공유수면	'97	무역항	92	15	652	민 간
			총무마리나	총무마리나	관리법						
		공 공	국가(경남도)	경상남도	항만법	'13		30	-	15	국 비
	사 곡	사 곡	거제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법	'97 '05	기타	-	10	8.4	지방비(8) 민 간(0.4)
	지세포	지세포	거제시	거제 요트협회	어촌어항법	'09 '13	국가 어항	20	-	35	국 비(2) 지방비(33)
	수영만	수영만	(주)대우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공유수면 매립법	'86	기타	293	155	711	기부채납 (대우→ 부산시)
운촌	The bay 101	(주)동백섬 마리나	(주)동백섬 마리나	지역특활발전특구 대항 규제특례법등	'14	기타	61	-	350	민간	
남천	남천	(주)진일월드 마린	(주)진일월드 마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14	기타	36	-	42	기부채납 (진일→ 부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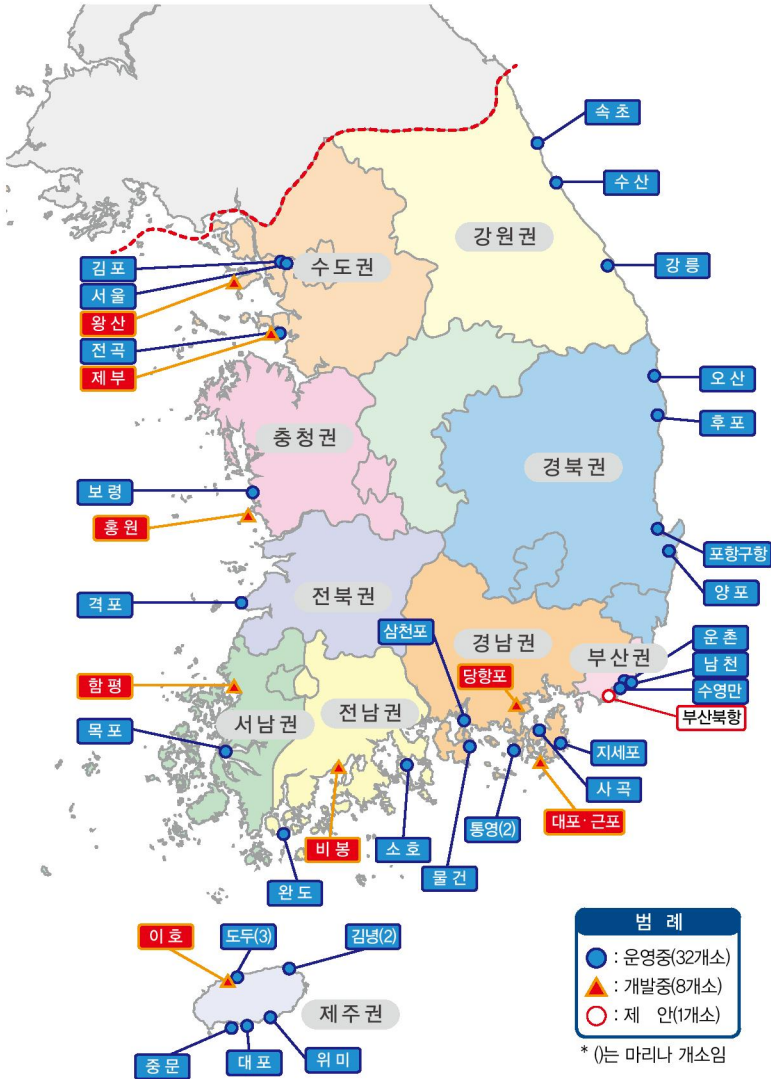
구분	위치 (항명)	마리나명	개 발	운영 주체	개발 근거	개발 년도	개발 구역	시설규모		개발 사업비 (억)	투자주체
								해상	육상		
운 영 중 (32)	양 포	양 포	국가 (해수부)	포항시	어촌어항법	'09	국가 어항	36	-	10	국 비(10)
	포항구항	포항구항	포항시	포항시	공유수면 관리법	'10	무역항	14	-	1.2	지방비(1.2)
	오 산	오 산	울진군	-	어촌어항법	'13	국가 어항	15	15	20	국 비(10) 지방비(10)
	후 포	후 포	국가 (해수부)	-	항만법	'13	연안항	7		15	국 비
	강 릉	강 릉	(주)시마스터	(주)시마스터	어촌어항법	'10	국가 어항	33	-	30	민 간
	수 산	수 산	양양군	강원도 요트협회	어촌어항법	'09	국가 어항	60		50	국 비(36) 지방비(14)
	속 초	공 공	국가 (강원도)	강원도	항만법	'13	무역항	30	-	15	국 비
	도 두	도 두	(주)도두마리나	(주)도두마리나	어촌어항법	'09	국가 어항	10	-	13	민 간
		한 라	한라대학	한라대학		'08		4	-	12	민 간
		공 공	제주도	제주도		'13		9	-	46	국 비(23) 지방비(23)
	김 녕	김 녕	(주)에니스	(주) 김녕요트투어	어촌어항법	'08	국가 어항	4	-	5	민 간
		공 공	제주도	제주도		'13		15	10	28	국 비(11) 지방비(17)
	위 미	위 미	해비치호텔& 리조트(주)	해비치호텔& 리조트(주)	어촌어항법	'08	국가 어항	1	-	140	민 간
중 문	중 문	퍼시픽 랜드	퍼시픽 랜드	공유수면 관리법	'91 ~'11	기타	15	-	706	민 간	
대 포	대 포	제이엠(주)	제이엠(주)	어촌어항법	'11	지방 어항	4	-	6	민 간	
소 계		1,750척									

구분	위 치 (항명)	마리나명	개 발	운영 주체	개발 근거	개발 년도	개발 구역	시설규모		개발 사업비 (억)	투자주체
								해상	육상		
개 발 중 (8)	왕 산	왕 산	인천시	-	경제자유 구역법	'14	무역항	150	150	1,500	국 비(50) 지방비(117) 민간(1,333)
	제 부	제 부	경기도	-	마리나 항만법	'15	기타	176	124	582	국 비(291) 지방비(291)
	홍 원	홍 원	국가(해수부)	-	어촌어항법	'15	국가 어항	50	50	81.98	국비 *방파제 등 기반시설 비용
	비 봉	비 봉	보성군	-	어촌어항법	'14.6	기타	20	-	70	국 비(35) 지방비(35)
	당항포	당항포	고성군	-	어촌어항법	'16	기타	50	50	92	국 비(49) 지방비(43)
	대포· 근포	대포· 근포	거제시	-	어촌어항법	'15	국가 어항	60	40	135	국 비(50) 지방비(85)
	이 호	이 호	이호랜드	-	공유수면 매립법	'14	기타	20	10	60	민간
	소 계		970척								

※ 노란 배경부분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미반영 지역임(운영중 14개소 / 개발중 2개소)

* 마리나항만법에 의거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마리나항만은 충무, 중문, 목포, 김포(운영중), 제부(개발중) 5개소임

5. 전국 마리나항만 개발 현황도(기본계획 미반영 포함)



마리나업 창업가이드북

초판발행 2015. 7. 7.

발행 해양수산부, (사)한국마리나산업협회

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실장

인쇄 (주)크리커뮤니케이션

본 책자 내용을 대외적으로 게재,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 혹은 (사)한국마리나산업협회의 사전 허락을 받기 바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처

(사)한국마리나산업협회(www.kmarina.org)

전화 : 031-996-3551

팩스 : 031-996-3558

이메일 : kmarina8028@naver.com

